

FSS/2409-06 :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

- **쟁점 분야:** 관계기업투자주식
- **관련 기준:**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(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)
- **결정일 :** 2024년
- **회계결산일 :** 2018.1.1.~2021.12.31.

1. 회사의 회계처리

A사(이하 ‘회사’)는 x1년 중 관계회사인 B사(이하 ‘관계회사’)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당기손익-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(FVPL)으로 분류하였다.

이후 x4년 중 회사는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관계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전환사채의 전환 전 장부가액*을 추가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**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았다.

* 최종 공정가치 평가일 :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

** 전환권 행사 이후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% 미만으로 관계회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

2.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

회사는 추가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산정 시 지급한 대가(본 사례에서는 전환사채)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.

3.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

-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(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)에서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008호(회계정책,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) 문단 10~11에 따라 개념 체계나 유사한 거래의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6.5(역사적원가)에 의하면 역사적원가는 자산 취득 등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,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.
- ③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(유형자산) 문단 6과 24등에 의하면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.
-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, 추가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.

4. 시사점

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비현금대가를 지급한 경우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한다.

또한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래나 사건에 대해 경영진은 개념 체계 및 다른 유사한 거래의 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한다.